

대전광역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년월일 : 1995년 7월 12일

제 출 자 : 의회 운영위원장

1. 제 안 이 유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시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500,000원 보조활동비 100,000원을 월정액으로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안 제2조).
- 나. 시의회위원 회의수당을 회기중 시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토록 함(안 제3조).
- 다. 시의회위원의 여비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의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 지급함(안 제4조).

3. 참 고 사 항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 ①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여비지급) ①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별표3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일비및여
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별 표 1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제2조 관련)

지급 기준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원 1인 월	500,000 원	100,000 원

【 별 표 2 】

회의수당 지급기준표 (제3조 관련)

지급 기준	회 의 수 당
1 일	60,000 원

【 별 표 3 】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1. 대전광역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이며,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별 표 4 】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4조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 등 정액	실비액	가등 급30	가등급 169	가등 급133	150	180	210
					나등 급30	나등급 123	나등 급99			
의원	· 공무상의 사유로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인하여 급행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 등 정액	실비액	가등 급25	가등급 137	가등 급107	140	170	195
					나등 급25	나등급 99	나등 급78			
					다등 급30	다등급 97	다등 급72			
					라등 급30	라등급 83	라등 급61			
					다등 급25	다등급 76	다등 급58			
					라등 급25	라등급 65	라등 급49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 · 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덴마크, 체코.

-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 (3) 유 럽 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튀니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과아이, 수리남.
- (3) 유 럽 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4. 3.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보조활동비
시 · 도 의 회 의 원	월 50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시 · 군 · 자치구 의 회의원	월 35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 (제15조 관련)

구 분	회 의 수 당 지 급 범 위
시 · 도 의 회 의 원	일 60,000원 이내
시 · 군 · 자치구 의 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별표 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원)

구 분	지 급 기준액	철 도 운 임	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시 · 도	의 장 · 부의 장	1등급	2등급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1등급	2등급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시 · 자치 · 군 · 구	의 장 · 부의 장	1등급	2등급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급액	정 액	정 액	6,500	16,200	10,500

- 비 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미불화)

구 분	지 급 기준액	항 공 일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 · 도	의 장 · 부의 장	1등급액	30	147	133	150	180	210
	의 원	1등급액	25	130	107	140	170	195
시 · 자치 · 군 · 구	의 장 · 부의 장	1등급액	25	130	107	140	170	195
	의 원	2등급액	20	114	81	130	155	180

-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